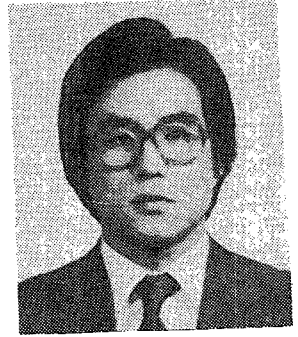


# 특별기고

## 石綿 (Asbestos)에 의한 被害와 法的 問題點



李 相 敦  
 <中央大 法大 助教授>  
 <法學博士>

### 3. 石綿으로 인한 被害에 관련된 法的 問題

#### (1) 損害賠償責任

美國法上 石綿으로 인한 被害者는 다음과 같은 法的 救濟가 주어질 수 있다.

石綿으로 인한 被害者(以下 被害者로 略稱)는 製造者(manufacturer)를 상대로 製造物責任訴訟(product liability action)을 제기하여야 한다. 그 根據는 過失(negligence), 保證의 違反(breach of warranties) 또는 嚴格한 責任(strict liability)이 될 것이다. 또한 製造者가 人體에 위험함을 알고도 製造·販賣하였다면 惡意(actual malice) 또는 詐僞(fraud)를 이유로 提訴할 수도 있다. 일반적인 경우에 過失의 與否가 핵심이 될 것인가 잠재적인 危險性을 警告하거나 通報하지 않은 것(failure to warn and inform)과 충분한 檢査를 하지 않은 것(failure to test)이 過失이었음을 被害者가 立證하여야 할 것이다.

製造物責任訴訟은 被害者가 勤勞者인 경우 그 僱傭主(employer)를 상대로 提起될 수는 없고 반드시 製造者(manufacturer)를 상대로 제기되어야 한다. 여기서 製造者란 넓은 의미로 中間製品 製造者도 포함된다. 一次的인 石綿製造業體에서 종사하던 중 石綿疾病을 얻은 勤勞者는 僱傭主와 製造者가 一致하는 경우이다. 石綿疾病은 그야말로 記錄的인 訴訟을 초래하였는데 대표적인 判例를 보면 다음과 같다.

Borel v. Fibreboard Paper Products

Corp., 493 F.2d 1076(5th Cir. 1973)은 石綿被害에 대한 代表的인 判例이다. Borel은 1936년부터 1969년까지 斷熱工事に 종사하였던 사람으로 石綿을 30년이나 다루었다. 그는 石綿疾病에 걸린 것을 알게 되어서 11個의 石綿製造業者를 상대로 損害賠償請求 訴訟을 제기하였다. 그는 裁判이 시작되기 전에 死亡하였기 때문에 그의 夫人이 訴訟을 승계하였다. Texas 外 所在 聯邦地法과 聯邦 第5抗訴法院은 嚴格責任論(strict liability)을 援引하여 原告에 勝訴判決을 내렸다. 第5抗訴法院의 John Wisdom 判事は 石綿이 포함되어 있는 製品은 非正常的으로 危險(unreasonably dangerous)하며, 이러한 製品의 製造業者는 이에 露出되던 危險하다고 警告(warn)하여야 함에도 이를 怠忽하였기 때문에 連帶的으로 責任이 있다고 判示하였다. 〇 判決은 美國의 最高法院인 聯邦大法院에서 確認되었다. Cert. Denied, 419 U.S. 869(1974)

Karjala v. Johns-Manville Products Corp., 523 F.2d 155(8th Cir. 1975)은 美國의 最大의 石綿製造業體인 Johns-Manville 社가 被告로 지정된 判決이다. 原告인 John Karjala는 1948년부터 1966년까지 역시 斷熱材 設置工(Insulation Worker)으로 石綿에 노출되어서 疾病에 걸렸다. 1971년에 그는 Johns-Manville 社를 상대로 損害賠償訴訟을 제기하였다. Johns-Manville 社는 1965년에 Dr. Irving Selikoff의 報告書가 발표되기까지 4

綿이 위험한 物質이라는 認識은 없었다고 주장하였으나 裁判 과정에 오히려 Johns-Manville 社は 1930 年경에 이미 石綿이 근로자에 매우 위험한 疾病을 야기한다는 것을 알고서도 그 사실을 은폐하였음이 폭로되었다. 法院은 原告에게 20 萬弗의 勝訴判決을 안겨 주었다.

이후 石綿製造業體를 상대로 제기된 訴訟은 급증하였다. 1980 年과 1981 年에는 石綿은 “法律上 缺陷있는 製品”(defective product as a matter of law)이라고 判示되었다. Hardy v. Johns-Manville Sales Corp., 509 F. Supp. 1353(E.D. Tex. 1981); Flatt v. Johns-Manville Sales Corp., 488 F. Supp. 836(E. D. Tex. 1980); Mooney v. Fibreboard Corp., 485 F. Supp. 242(E.D. Tex. 1980). 따라서, 訴訟의 눈사태(avalanche of litigation)라 할 정도로 많은 訴訟이 石綿製造業者를 상대로 제기되었다. (Wall Street Journal 紙는 1968 年부터 1982 年까지 20,000 件의 訴訟이 石綿으로 인한 被害者에 의하여 제기되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러한 사태로 인하여 全石綿製造業體는 끊임없는 訴訟에 시달렸으며 이로 인하여 業界 전체가 破産할 것으로까지 추측되었다. 그러나 이 時點에서 業界가 破産하여 버린다면 5 年, 10 年 그리고 30 年 後에 發病할 수백만의 被害者는 누구를 상대로 賠償을 청구할 것인가 하는 問題를 야기하였다. 뿐만아니라 대다수의 業體는 과거에 石綿의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作業을 하였던 것도 事實이다. 그리하여 業界에 게 모든 責任을 지우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하는 의문도 있다.

또 하나의 難點은 保險과 관련하여서이다. 대부분의 石綿製造業體는 產災保險 및 製造物責任 保險을 들고 있었다. 그러나, 石綿疾病은 그 潜伏期가 매우 길기 때문에 業體는 그간 몇개의 保險會社와 契約를 체결하는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身體에 損傷(bodily injury)이 발생한 당시의 保險會社가 填補할 責任이 있다. 그러나, 石綿疾病의 경우 최초로 石綿에 露出(exposure)된 후 疾病이 나타나기(manifestation)까지는 10 年, 20 年 또는 30 年이 걸린다. 따라서, 露出時

의 保險會社가 補償을 하여야 하는지, 疾病이 나타난 당시의 保險會社가 補償하여야 하는지의 問題가 대두되었고, 美國의 法院들은 混亂된 判決을 보였다. 즉, 第 6 抗訴法院은 露出時의 保險會社라 하였고, Insurance Co. of North America v. Forty-Eight Insulations, Inc., 633 F.2d 1212(6th Cir. 1980), 第 1 抗訴法院은 疾病의 증상이 나타난 시점의 保險會社라 하였으며, Eagle-Picher Industries, Inc. v. Liberty Mutual Insurance Co., 682 F.2d 13(1st Cir. 1982), D.C. 地區의 抗訴法院은 露出時부터 發病時까지의 모든 保險會社가 補償責任이 있다고 하였다. Keene Corp. v. Insurance Co. of North America, 667 F.2d 1034(D.C. Cir. 1981). 聯邦大法院은 이에 대한 統一된 判決을 수립하기를 거부하였다. 따라서, 業體와 保險會社 및 被害者 간의 紛爭과 混亂은 극심하였다. 이들은 분명히 議會가 特別法을 제정하여 이 問題를 해결하여 주길 기대하였지만 議會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

#### (2) Johns-Manville 社의 破産申請事件

1982 年 8 月 26 日 最大의 石綿製造業體인 Johns-Manville 社は 聯邦破産法(Federal Bankruptcy Act)의 제 11 章(Chapter 11)에 근거하여 法院에 破産을 申請하였다. 당시 Manville 社は 장부상의 評價資產 11 億弗의 健全한 黑字運營 企業이었고, 따라서, 결코 支拂不能(insolvent)의 상태는 아니었다. 그러나 Manville 社は 당시 同社를 상대로 月 평균 500 件 씩이나 제기되고 있는 石綿疾病 損害賠償訴訟으로 인하여 未來의 어느 時點에 가서는 결국 支拂不能이 될 것이라 하여 破産을 申請한 것이다. 破産申請이 適法하게 인정되면 會社는 再組織(reorganization)되며, 再組織중인 會社를 상대로는 여하한 訴訟도 제기될 수 없다. 이러한 Manville 社의 전략은 被害者들을 분개시켰다. 그러나, Manville 社의 주장은 상당한 合理性을 갖고 있었다. 즉, 同社가 몇년 후에 완전히 破産하여 버린다면 그 이후에 發病하는 被害者는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Manville 社は 現在와 未來의 被害者에게 衡平的

인 補償을 줄 수 있는 方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Manville 社가 1983 年 여름에 提示한 再組織案은 現在 및 未來에 나타날 石綿被害者에 지급하여야 할 賠償金의 總額을 基金의 形式으로 마련하며, 再組織 以後의 會社는 石綿被害에 관하여 免責된다는 것이다. Manville 社의 破産申請 및 그 再組織 問題는 現在도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 (3) 結 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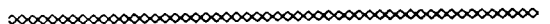
石綿으로 인한 人命 및 健康 被害가 얼마나 되는지는 오직 推測할 수 있을 뿐이다. 美國의 한 研究는 美國內의 이러한 被害는 1980 年의 弗貨로 무려 400 億弗 내지 800 億弗이 될 것이라고 결론 내린 바도 있다. 이는 全石綿業體의 資産을 훨씬 上廻하는 막대한 비용이다. Manville 社가 破産을 申請한 것은 議會가 이 問題를 신속히 다루도록 壓力을 가하는 한 수단이었다고도 알려져 있다. 石綿被害의 賠償은 결국 政府에 의하여 保障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한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 4. 結 語

石綿은 美國에서 아직 生産되고 있으나, 그 用度는 大幅 감소하였고, 또한 作業環境도 개선되었다. 즉, 石綿 作業은 嚴格한 規制를 받고 있어서 과거와 같은 불상사가 생길 가능성은 감소되었다. 또한, 과거에 특히 石綿疾病을 크게 유발시켰던 石綿使用製品은 더 이상 生産되거나 판매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未來의 世代는 石綿가 루에 의한 疾病에서 解放될 것이다. 그러나, 앞서 지적된 바와 같이 石綿은 우리 주위에서 많이

使用되어 왔고, 따라서 우리 주위에 여러가지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筆者는 우리나라의 石綿産業과 石綿製品의 現況이나 石綿疾病에 관하여 아는 바가 없다. 그리고, 아직은 이 問題가 심각히 論議된 적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판단하더라도 石綿製品은 우리 주위에서 많이 존재하는 것 같다. 따라서, 筆者는 더 늦기 전에 石綿에 關하여 政府가 全面的인 調査를 할 것을 촉구하고자 한다. 美國의 經驗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매우 심각한 問題이다. <끝>



- \* 本稿의 後半은 다음 論文에 근거하였다.
- Ford, Who Will Compensate the Victims of Asbestos-Related Diseases? Manville's Chapter 11 Fuels the Fire, 14 Environmental Law 465 (1984)
- Agrawal, Asbestosis: Who Will Pay the Plaintiff? 57 Tulane Law Review 1491 (1983)
- Brennan, Collateral Estoppel in Asbestos Litigation, 14 Environmental Law 197 (1983)
- Phillips, Asbestos Litigation: The Test for the Tort System, 36 Arkansas Law Review 343 (1982)

☆ 믿는 마음 지킨 약속

다져지는 신뢰사회 ☆